

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6월 9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균

국 무 위 원

법무부장관

추 미 애

●법률 제17361호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수 있다”를 “수 있으며,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사법경찰관은 추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정보전과 관련한 신청, 보완·수정,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7조 전단 중 “취소”를 “전부 또는 일부 취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소제기 전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및 추정보전명령 제도를 두어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과는 다르게 기소 전 추정보전명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 추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행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소 전 추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을 둬으로써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정보전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